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7. 13(금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운영지원과	담당자 ·과장 전형필, 사무관 윤준상, 주무관 민영은 ·☎ (044) 201-3146, 316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“국토부, 인·허가 담당 퇴직 간부 ‘진에어 재취업’ 목인했다”는 사실과 다름

-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이며, 동 법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, 건축·토목·환경·식품위생 분야 인허가 등 업무담당 5~7급 공무원* 등으로 규정

* (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) 감사·회계 및 건축·토목·환경·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등 업무 담당 5~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

- 해당 퇴직자(2인)는 항공 정비분야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하였으며,

-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토목·건축 등 재산등록의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님

-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나 지원을 한 사실이 없으며,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경향신문 인터넷, 7.13.) >

- ◆ 국토부, 인·허가 담당 퇴직 간부 ‘진에어 재취업’목인했다
 - 항공분야 인허가 부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, 명예퇴직시 4급으로 퇴직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윤준상사무관(☎ 044-201-31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